

8 공유재산 및 물품 / 지방 공공기관

8-1. 공유재산 및 물품

-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,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, 다음은 우리 대덕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7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' 17년도 현재액		증 가		감 소		' 18년도 현재액		비고
	수량	금액	수량	금액	수량	금액	수량	금액	
합 계	37,156	525,970	4,363	23,184	18	4,207	41,501	544,948	
토 지	3,067	370,673	28	16,266	17	4,173	3,078	382,766	
건 물	134	61,669	29	3,727	1	34	162	65,362	
입목축	29,520	2,547	4	1,751	-	-	29,524	4,298	
공작물	4,390	90,318	4,301	1,440	-	-	8,691	91,758	
기계가구	1	43	-	-	-	-	1	43	
무체재산	42	561	1	0.1	-	-	43	561	
용익물권	2	160	-	-	-	-	2	160	

- '18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

☞ 공유재산 증가, 감소, '18년도 현재액, 전년대비 증감이 큰 항목 등 설명

- 다음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7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.

(단위 : 개, 백만원)

구 분	' 17년도 현재액		증 가		감 소		' 18년도 현재액		비고
	수량	금액	수량	금액	수량	금액	수량	금액	
계	577	5,455	72	441	50	310	599	5,586	
구 매	577	5,455	72	441	36	183	599	5,586	
관리전환	-	-	-	-	-	-	-	-	
양 여	-	-	-	-	-	-	-	-	
기 타 (폐기처분)	-	-	-	-	14	128	-	-	

- '18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

❖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4	2015	2016	2017	2018
공유재산	467,874	518,997	524,286	525,970	544,948
물 품	4,346	4,397	4,766	5,455	5,586

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



▶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

8-2. 출자·출연금 집행현황

■ 출자금이란 공사·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,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. 다음은 우리 대덕구의 2018년도 출자·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세출결산액 (A)	출 자 금		출 연 금		비 고
		금액 (B)	비율(B/A)	금액 (C)	비율(C/A)	
합 계	381,926	-	-	6	0	
일 반 회 계	353,684	-	-	6	0	
특 별 회 계	3,740	-	-	-	-	
기 금	24,502	-	-	-	-	

▶ '18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(502), 출연금(306) 집행총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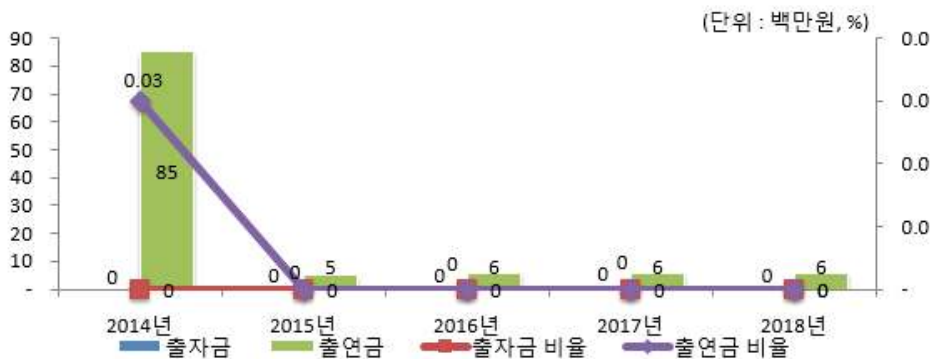
연도별 증감현황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2014	2015	2016	2017	2018
세출결산액 (A)	305,195	313,407	340,950	361,268	381,926
출자금 (B)	-	-	-	-	-
출자금 총액 (C)	-	-	-	-	-
출자금 비율 (B/A)	-	-	-	-	-
출연금 (D)	85	5	6	6	6
출연금 비율 (D/A)	0.03	0	0	0	0

▶ 출자금 총액(C)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(누계)총액(결산서 참조)

출자·출연금 집행현황



☞ 우리 구의 출자금은 없으며, 출연금은 한국 지방세연구원의 법정 출연금만 지급합니다.

❖ 2018회계연도 출자·출연금 세부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기관·단체명	금액	근거 (법·조례명 등)	내용
출연금	소계			
	일반회계	한국지방세연구원	6	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

8-3. 출자·출연기관 현황 : 해당 없음

- 지방 출자·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(지분을 10% 이상)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「지방출자출연법」에 따라 지정·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.

● 출자기관이란?

-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

● 출연기관이란?

- 문화, 예술, 장학(獎學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

8-4. 지방공기업 현황 : 해당 없음

- 지방공기업이란 주택, 도시철도, 상수도,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(직영기업) 공사,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.